

18 (第123回-第3次)

<p>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됨.</p> <p>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 5. 토론 요지 : 생 략 6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(재적위원 12명, 출석위원 12명 전원일치) 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</p> <p>서울특별시 다중이용화장실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급 조례안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2002년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도심지, 관광지역 등에서 자정까지 또는 24시간 개방하는 다중이용화장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,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“다중이용화장실”이라 함은 주유소, 음식점, 대형빌딩, 터미널, 극장, 예식장, 시장, 상가 등 다중이 모이는 건물에 부속된 화장실을 말한다. “보조금”이라 함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권장하는 사업에 공익상, 시의 정책상 필요에 의거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. <p>제3조(보조금 교부대상 및 조건) ①도심지 및 관광지역(인사동·이태원거리, 남대문·동대문시장, 신촌 등)에 위치한 다중이용화장실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의 보조금 교부조건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자정까지 또는 24시간 화장실의 개방 2. 안내표지판, 안내유도 사인의 설치 및 부착의 허용 <p>제4조(교부 범위 및 방법, 기간) ①보조금의 교부범위는 화장실에서 사용된 소모품비, 전기료, 상·하수도료 및 개방으로 인해서 파손된 경우의 수리경비를 포함한다.</p> <p>②보조금의 교부방법은 공인회계사 등 전문기관의 정확한 가액산출을 근거로 매월 교부한다.</p>	<p>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규정한 수리경비는 현장을 실사하여 산정된 가액에 한하여 지급한다.</p> <p>④보조금의 교부기간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월드컵대회가 끝나는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.</p> <p>제5조(의무)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선량한 관리자로서 화장실을 청결하고 체적하게 유지 2. 보조금의 용도와 사용금지 <p>제6조(제재)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. 정당한 사유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3. 제5조 각호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width: 10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width: 10%;">699</td> <td style="width: 10%;">2000년 11월 일 문화교육위원회</td> </tr> </table> <p>1. 심사경과</p> <p>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년 9월 19일, 서울특별시장</p> <p>나. 회부일자 : 2000년 9월 21일 회부</p> <p>다. 상정일자 : 제122회 임시회 제4차 문화교육위원회(2000. 10. 5 심사보류) 제123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(2000. 11. 9 원안가결)</p> <p>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문화관광국장 최령)</p> <p>가. 제안이유 체육진흥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을 설치·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발전</p>	의안 번호	699	2000년 11월 일 문화교육위원회
의안 번호	699	2000년 11월 일 문화교육위원회		

<p>과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를 통하여 서울특별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</p> <p>나. 주요 골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금의 조성 재원을 정함.(안 제2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출연금 -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- 정부의 출연금 등 기타 수입금 ○ 기금의 사용 용도를 정함.(안 제3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 육성사업 -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 - 체육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- 전국체육대회·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 사업 -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○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·운영하도록 함.(안 제4조) ○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·운용하도록 하고,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전년도이자 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도록 하되, 적립기금 총액이 500억 원이 될 때까지는 운용기금을 운용하지 아니하도록 함.(안 제6조) <p>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윤병국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조례안은 체육진흥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을 설치·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를 통하여 서울특별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고 제안된 것임. ○ 먼저, 기금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(재산 및 기금의 설치)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, 그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기금설치에 관한 한 특별한 법령상의 제약은 없고 자율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음. ○ 현재 서울시 체육회에 대한 예산 지원은, 예산의 형태로서 직원 인건비 등 일정액의 경상비와 체육지도자 및 선수 육성 등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는바, 최근 3개년간 지원 규모를 보 	<p>면 '98년도에 43억7천9백만 원, '99년도에 42억5천9백만 원, 금년도에는 53억9천6백만 원임.</p> <p>요컨대 동 조례 제정의 기본 취지는 기존의 예산형태로 지원하는 서울시 체육회에 대한 지원 사업을 일정 기금을 조성하여 그 조성된 금액의 이자 수익금으로써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,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총 500억 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50억 원을 출연 받아 그 이자 등 기금 운용 수입범위 내에서 체육육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.</p> <p>또한 운영방법으로서는 9인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기금의 조성, 운영방법, 결산 등 전반에 걸쳐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음.</p> <p>결국 동 조례의 심의의 요체는 기존의 예산 형태로서 운영하던 서울시 체육회에 대한 지원사업을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목표로 하고 있는 기금 규모의 적정성에 있다고 볼 수 있음.</p> <p>○ 먼저,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게 되면, 조성목적에 맞는 자율성을 부여받을 수 있고 재정적인 안정성을 바탕으로 소기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, 수입재원의 대부분이 일반회계의 전출금으로 되어 있어 별도로 기금 설치의 실익이 별로 없고, 기금의 운용전반에 있어서도 기금 특성상 의회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는 단점이 있음.</p> <p>참고로 타 시·도의 기금운용실태를 살펴보면, 16개 시·도 중 11개 시·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, 그 규모도 경기도가 1000억 원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대구가 250억 원, 강원, 충남, 경북이 각각 200억 원, 그밖의 광주, 대전, 경남 등에서 각각 100억 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중에 있음.</p> <p>결국 타 시·도 대부분이 기금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체육육성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, 서울도 수도서울의 궁지와 체육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</p> <p>또한 그 규모 면에서도 기금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500억 원의 이자 수익금이 현재</p>
--	---

<p>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규모와 비슷한 측면에서 과다한 규모라고는 볼 수 없음.</p> <p>그 밖에 조례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운용·심의회, 기금의 운영계획, 기금의 관리·운영방법 등에 관한 내용도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른 기금들과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.</p> <p>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</p> <p>5. 토론요지 : 없음</p> <p>6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</p> <p>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</p> <p>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</p> <p>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의안 번호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720</td></tr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10%;">2000년 11월 일 문화교육위원회</p> <p>1. 심사경과</p> <p>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년 10월 23일, 서울특별시교육감</p> <p>나. 회부일자 : 2000년 10월 23일 회부</p> <p>다. 상정일자 : 제123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(2000. 11. 9 원안가결)</p> <p>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교육지원국장 이원근)</p> <p>가. 제안이유</p> <p>2001학년도 3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의 중학교 2개교 신설 및 9개교 교명변경, 고등학교 1개교 위치변경 및 3개교 교명변경, 특수학교 1개교 신설,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6개원을 신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</p> <p>나. 주요골자</p> <p>○ 중학교 2개교 신설 및 9개교 교명변경[별표2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상봉중학교(중랑구 상봉1동 282) · 수송중학교(강북구 번동 456) - 교명변경(남녀공학 전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승인여자중학교→승인중학교, · 전농여자중학교→전일중학교 · 연희여자중학교→연희중학교, 	의안 번호	7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도봉여자중학교→신도봉중학교 · 상계여자중학교→상계제일중학교, · 강남여자중학교→강현중학교 · 봉천여자중학교→봉원중학교, · 상도여자중학교→상현중학교 · 성수여자중학교→성원중학교 <p>○ 고등학교 1교 위치변경 및 3교 교명변경</p> <p>[별표3]</p> <p>- 위치변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혜화여자고등학교 : 종로구 혜화동 13-1→ 강북구 수유동 468-43 <p>- 교명변경(학과 개편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선린정보산업고등학교→선린인터넷고등학교 · 동호공업고등학교→동호정보공업고등학교 · 서초전자공업고등학교→서초전자고등학교 <p>○ 특수학교 1교 신설[별표5]</p> <p>- 학교명 : 서울정민학교(노원구 하계동 153-1)</p> <p>○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6개원 신설[별표7]</p> <p>- 유치원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서울마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(마포구 도화2동 347-5) · 서울백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(금천구 시흥5동 438-5) · 서울한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(용산구 한남2동 726-1) · 서울강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(강동구 고덕2동 222) · 서울정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(성북구 동소문동7가 118-1) · 서울승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(성북구 하월곡1동 84-86) <p>3. 전문위원 겸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윤병국)</p> <p>○ 동조례는 2001학년도 3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의 중학교 2개교 신설 및 9개교 교명변경, 고등학교 1개교 위치변경 및 3개교 교명변경, 특수학교 1개교 신설,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6개원을 신설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임.</p> <p>○ 이번에 조례 개정에 의해 변경되는 내용을 보면, 중학교 2개교(상봉중, 수송중), 특수학교 1개교(서울정민학교),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6개원(마포초 병설유치원, 백산초 병설유치원, 한남초 병설유치원, 강덕초 병설유</p>
의안 번호	720		